

1. 계획서

1. 활동일정

주 활동내용	예비1	예비2	1	2	3	4	5	6	7	8	비고
1. 찾아가는 사랑의 편지 활동/대상가구조사 및 선정			>								
2. 자원활동가 모집 및 교육				>							
3. 대상가구 방문 및 활동				>							
4. 인권조례안연구모임 결성			>								
5. 인권조례안 연구 모임실시						>			>		
6. 거주외국인 담당변호사제 기획			>								
7. 제주변호사방문 및 설명							>				
8. 도지사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의원 대상 설명회										>	
9. 외국인자문위원회설립연구								>			
10. 인권조례안 완성 및 발의										>	

2. 세부활동

① 찾아가는 사랑의 편지활동

가. 대상자 선정

1) 제주도의 거주외국인 세대는 약 1500가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PPT 통계표 참조) 이 중 약 600가구를 1차 사랑의 편지활동대상자로 정합니다.(1가구 2봉투 원칙)

2) 이에 대한 기준은 봉사지원자의 교통편의 등 제반여건 고려합니다.

도청과 유관기관에서 세대의 주소 등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 전 전화 등을 통하여 현주여부를 살필 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자원활동가모집 및 교육

1)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시 사랑의 편지활동의 내용과 거주외국인정책에 대한 설명 및 교육활동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약 30명의 기준(최소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으로 하루 5가구 4일인 경우 20가구정도를 직접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를 하지 못했을 시 부재 중인 집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찾아왔으나 만나지 못했다는 메모를 남깁니다.

자원활동가 30명은 로스쿨 리걸 클리닉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원자모집이 가능하고 로스쿨인원의 자발적 지원자도 현재 상당하므로 인원 당 하루 정도의 자원봉사활동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제주대학교의

외국인 학생비율이 높기에 이에 의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 활동방향

1) 자원봉사자를 모집 후에는 사랑의 편지의 취지와 편지를 전해줄때의 인사말을 확인합니다. 다정한 미소와 함께 한국의 젊은이들이 외국인의 제주의 정착에 관심이 크다는 느낌이 마음으로 다가가도록 합니다.

2) 서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원의 자원봉사자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제주지역의 특성상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 외국인사이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어느 정도 편지활동에 대한 얘기가 오고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편지의 내용에는 다양한 국가출신의 다양한 인권의 개념이 있을 것이므로 인권의식 조사를 먼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 고충사항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합니다.(사랑의 편지 봉투에 하트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 수령인이 시간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로스쿨 리걸클리닉 센터의 주소를 표기하여 알려줍니다. 직장에 있는 가구구성원에게도 전달한 편지를 건네줍니다.

라. 의미

1) 제주도 사상 가장 많은 인원수의 외국인 대상 인권설문조사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



인 인구센서스 조사를 제외하고 인권관련 찾아가는 편지조사를 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600가구 대상의 조사가 원활하거나 자원봉사자가 인원이 많은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인권조례입안을 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② 인권조례안의 입안

가. 현황

1) 제주지역은 인권조례안에 대하여 관심이 크므로 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제주지역외국인지원단체에서 인권조례연구모임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제주지역인권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교육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연구모임은 지역 내 도의회 의원, 학계 인사와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될 수 있으나 각 인사분들이 제주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전면적인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추진은 하고 있으나 연구를 수행할 중점적인 중심축이 없습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인원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나. 팀의 활동내역

1) 먼저 저희들은 제주지역 외국인지원관련단체에 방문을 통하여 저희들의 활동계획을 설시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단체 역시 법률가분들이 바쁘셔서 실질적인 조례안검토를 하기가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2) 로스쿨생으로서 제주대학교 등 학계인사분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수월하며 일정부분 제주도 변호사분들과의 교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도의원분들과도 관계도 지속화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체세력만이 있다면 제주도 인권조례안은 충분히 상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연구하고 시간을 내어 규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저희 Express Force팀이 하겠습니다.

다. 추구하는 조례안의 특성 및 가능성

1) 제주지역은 다문화는 있으나 다문화정책과 인권기준은 부재한 현시점에서 인권친화적 다문화정책의 개념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 제주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인권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거나 체득할 수 있는 제도는 국가법령보다 지자체의 조례가 직접적이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지역이 평소 국가시책보다 제주도 특유의 지방시책에 대한 호감이 많은 성향을 반영하겠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외국인관련조례에 실질적인 인권의식이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라. 활동방향

1) 조례안연구모임결성

조례안 연구모임은 기존 국내 및 외국조례안을 검토하여 일정 조례안을 제시하여 연구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달간의 활동기간 중 2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안을 통한 외국인자문위원회의 설치입법청원

외국인자문위원회는 기존의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와 외국인자원시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갖춘 통합형임을 적시하여 이에 대한 효율성을 설명화를 통하여 논의합니다.(열거위원회의 실질적 성격이 자문위원회임을 근거하였습니다. 본질적 목적은 도의회에 거주외국인특별위원회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달간의 활동으로는 무리가 있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인자문위원회의 설치의무 부과 및 실질적 활동추구

-해외 및 국내사례검토

-외국인자문위원회설치에 따른 제주도이 미지제고효과연구

-도지사 및 국회의원 대상 설명회 및 공청 회 실시

③ 인권조례실용화를 위한 법률지원시스템

가. 필요성

1) 법률상담의 원스탑체계성립방안제시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거주외국인등록시 담당변호사제 실시는 외국인인권보호에 많은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지역에서는 기존의 형사사건에 한정된 외국인전담변호사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제도는 법률구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의 가정안의 변호사활동처럼 법률수급자에게 친밀한 이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인권조례안에 반영하여 외국인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2) 인권에 대한 보호는 사전적 보호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문영역의 중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로펌의 자문을 구하는 이유는 사후의 소송에 따른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변호사를 통한 자문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변호사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입니다.

나. 홍보방안

1) 제주도 변호사수는 36명인바 이들의 사무소는 제주지방법원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교류를 통하여 알고 있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제주지역 변호사에게 연락 등을 통하여 사무소를 방문하는 취지를 설명드립니다. 제주도 변호사는 소송수임이 아주 어렵지는 않으며 서울지역보다 수임료는 적지만 치열한 경쟁속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과 공조하여 일정 부분소득을 이루고 있습니다.

2) 이들에게 담당변호사제도를 통하여 본인이 일정부분 지역의 소수자인 거주외국인을 위한 일을 한다는 봉사정신을 자극한다면 충분한 담당변호사제도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봅니다. 관련단체나 공무원의 요구나 홍보방안, 서면에 의한 요청은 호응을 얻지 못할 것 이지만 로스쿨의 학생이란 신분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회봉사의 열망을 자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제주지역 상담 및 소송현황

1) 제주지역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출처-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 기간 : 2009.1~12
- 상담이용인원 : 115명
- 상담구분 : 개인상담 92건, 가족상담 37건

- 상담주제별 : 부부문제 70건, 경제문제 4건, 기타 52건, 부모문제 2건

- 지원방법 : 심리정서지원 62건, 정보자료제공 41건, 프로연계 3건, 타기관 연계 4건

2) 이주 노동자 고충처리 상담사업(출처-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 월별상담현황

구분	계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사업장이동	부당해고	상여금	퇴직금	4대보험	의료상담	체류	불법취업	자진출국	부적응	기타
계	432	64	1	39	66	10	0	11	4	19	4	0	3	23	188
1월	17	7		1	1			2		1				3	2
2월	4	1		1	1					1					
3월	18	2	1		5			2	1	1				2	4
4월	34	10		4	8			2			1			1	8
5월	21	9			7					1			1	1	2
6월	12	3		1	4										4
7월	31	1		6				1		1			1	3	18
8월	30			1	5			1			1		1	1	20
9월	21	1		2	3	1		1	1		2			2	8
10월	80	9		5	5	1			2	2				3	53
11월	66	12		12	11	4		2		10				2	13
12월	98	9		6	16	4				2				5	56

◆ 국적별 상담현황

구분	계	임금 체불	산업 재해	폭행	사업장 이동	부당 해고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	의료 상담	체류	불법 취업	자진 출국	부적용	기타
계	432	64	1	39	66	10	0	11	4	19	4	0	3	23	188
중국	91	21	1	8	13	3		6	2	6	2			2	27
인도네 시아	99	25		10	13	1				3			1	2	44
스리 랑카	21	3		3	4										9
베트남	88	3		14	24	3		3	1	5				7	28
태국	72	5		2	6					3			2	2	52
몽골	7														7
우즈베 키스탄	6				2			2							2
필리핀	8			2						1					5
파키 스탄	4									1	1			2	
캄보 디아	10	3			4									3	
대만	1												1		
미국		1				3			1						
러시아	2	2													
한국		1									1			2	14



3) 이를 살피면 중복된 것을 고려하면 약 500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담에 그치고 소송에 이르는 수가 약 70건(형사 37건, 가사 22건, 민사 11건, 제주지방법원 제공)에 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모든 사안을 포함하여도 변호사 일인당 약 10건정도가 될 것입니다. 기존 변호사에게 상담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담당변호사제도가 활성화가 된다면 이보다 건수가 높아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변호사 자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로 인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라. 실효성 및 가능성

1) 이러한 효과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려진다면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도 전반이나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국가가 이미지제고 비용으로 수천억원을 투자할 만큼 한분야의 이미지는 중요합니다. 기존의 법률구조적 변호사제도가 법원의 위탁이나 중심적인 활동에 따른 국선변호인제도였다면 담당변호사제도는 변호사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자신의 담당변호사 사무실번호를 외국인 등록 시 바로 알게 됩니다. 전화를 통하여 담당외국인임이 확인된다면 사실상 통신사의 VIP대우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자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자원으로 실시하더라도 충분한 많은 인원의 변호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차후의 호응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자발적인 실비변상이나 등록에 따라 월1만원정도

의 실비변상적 납부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의 문제는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를 통한 혜택과 관련하여 과연 부담만을 주는 금전부과인지를 검토해보아야겠습니다.

마. 의미 및 발전 가능성

1) 담당변호사를 신청하는 경우 무엇보다 로스쿨생의 봉사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무직원이나 외국인지원단체의 상담역과 달리 예비법조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인력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스쿨생의 실무교육이 사실상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고 일정한 인원의 신청이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거주외국인은 준전문적인 법률적 검토를 받을 기회가 보장됩니다.

2) 차후에 있어서 법률시장이 개방됩니다.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외국로펌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내변호사가 그나라 법을 가장 알고 그들의 지원을 받고 그들의 성향을 마음으로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일정 영역에 있어서는 점유율을 상실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영역을 개발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역개척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에서의 변호사자문제도의 시초로 거주외국인을 통하여 변호사의 가치를 상승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변호사의 자문이 한국사회에서는 비용이 사실상 청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정부분 상시적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비용의 청구는 부담을 증가시키고 변

호사의 공익활동의 의미가 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익활동이 무료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3) 차후 변호사보험제도 또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일정한 소가는 보험료납부를 통하고 그 이상은 또 다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자에게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금전문제가 해결되어야 본인의 전문화를 이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로스쿨생의 법조계의 대량진출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경쟁의 치열함과 함께 법조인이 많은 소득을 얻는 직업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험제를 통한 변호사활동도 충분히 공익활동에 기여하고 변호사의 생활영위에도 안정을 가져온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로펌활동을 통한 높은 액수의 소송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욱 전문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 최종 효과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이미지는 제고되고 외국인들에게 소문이 날 것입니다. 외국인이 자문변호사를 들 수 있는 곳, 이러한 곳이 세계 어느 곳에 있을까요? 이것은 친외국인정책을 통하여 투자요소 증대시키고(물론 제주에서는 투자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실질적 국제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배타적 국가가 아니라라는 이미지 형성한 것에 예비법조인인 로스쿨생과 현직변호사와 재단법인 동천의 삼각체제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의미있는 일입니다. 변호사역할의 공익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